

[
사 고 신 고 담 보 금
]
처리를 위한 약정서

[
지급정지가처분담보금
]

별지와 같이 (사고신고,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이 송달)된 어음 또는 수표(이하 "어음"이라 한다)의 발행인(환어음이 인수된 경우에는 인수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
_____는 (사고신고,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의 송달)의 이유가 어음금 지급자금부족을 은폐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장하고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어음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금상당액을 예탁함에 있어 동 어음의 발행인을 요약자(이하 "고객"이라 한다), 지급은행을 낙약자(이하 "은행"이라 한다),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된 자를 제 3 자(이하 "제 3 자"이라 한다)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.

※ 본 약정서에서 "지급정지가처분명령"이라 함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"은행"으로 하여금 "고객"의 당좌(가계당좌)예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모든 가처분명령을 말한다.

제 1 조 고객은 금 _____ 원을 제 3 자를 위하여 은행에게 예탁하고 은행은 이를 제 3 자를 위하여 수탁한다.

제 2 조 은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 3 자의 지급청구에 따라 제 1 조의 예탁금을 제 3 자에게 지급한다.

1. 제 3 자가 어음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
2. 제 3 자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문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문을 제출한 경우. 다만,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3. 고객이 제기한 어음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제 3 자가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
4. 고객이 제 3 자에 대한 어음금지급에 동의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

다만, 동 어음에 대한 법원의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3 조 은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 1 조의 예탁금을 **고객**에게 지급한다.

1. **제 3 자**가 제기한 어음금지급청구소송에서 **고객**이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**은행**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
2. **고객**이 어음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**은행**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
3. 당해어음채무로 인하여 **고객**이 **제 3 자**를 위하여 별도로 담보공탁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공탁해당금액. 다만, **고객**이 당해어음의 지급정지가처분신청과 관련하여 담보공탁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
4. **고객**이 당해어음을 회수하여 제시하는 경우
5. 당해어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**은행**에게 제출 한 바가 없고 지급제시일로부터 6 개월이 경과한 경우. 다만,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이 **은행**에게 제출되었더라도 동 소송이 지급제시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각하 또는 취하되었을 경우에는 지급제시일로부터 6 개월이 되는 때에 지급하고, 지급제시일로부터 6 개월이 경과하여 각하 또는 취하되었을 경우에는 동 사실을 **고객**이 입증한때에 지급함
6. 당해어음이 지급제시기간내에 제시되지 않은 경우

제 4 조 (사고신고, 지급정지가처분신청) 사유가 분실, 도난이고 당해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아 법원의 판결문을 **은행**에게 제출하고 1 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**은행**은 제 1 조의 예탁금을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은 **고객** 또는 **제 3 자**에게 지급한다. 다만, 신고된 권리를 보류하고 증권의 무효를 선고한 제권판결문을 제출한 경우 및 제권판결불복의 소가 제기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5 조 은행이 본약정서의 규정에 따라 **제 3 자** 또는 **고객**에게 제 1 조의 예탁금을 지급한 때에는 **은행**은 본약정상의 채무로부터 면책되며 지급후 본약정서에서 정한 별도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**고객** 또는 **제 3 자**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.

제 6 조 은행이 본약정서의 규정에 따라 제 3 자 또는 고객에게 제 1 조의 예탁금을 지급하기 전에 본약정서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은행은 예탁금을 변제공탁할 수 있고 변제공탁함으로써 은행은 본약정상의 채무를 면한다.

제 7 조 제 1 조의 예탁금처리에 관하여 본약정서에 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어음교환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8 조 고객과 은행은 본약정관련 어음소지인의 동의없이 본 약정을 해약하지 못한다.

년 월 일

요약자(고객) 성 명 (인)

주 소(선택항목)

전화번호(선택항목)

낙약자(은행) 하나은행 지점장 (인)